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며, 산업입지정책 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민간부문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의3).

. (8 2)
(10 2).

다. 소규모·첨단 산업단지 및 민간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최소 지정규모를 완화함(안 제13조제7항).

라.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안의 간선도로·녹지 시설·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2항).

마.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판매시설, 전시시설,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제4항).

바.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분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40조의2제1항).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1항중 “20인” 을 “25인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3제3항중 “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” 를 “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과 산업입지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” 로 한다

제6조의2제1항중 “공업배치기본계획 등” 을 “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” 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삭제한다

제13조제7항중 “15만제곱미터 이상(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)으로 한다.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역 및 입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미만(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)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.” 를 “3만제곱미터 이상(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)으로 한다.” 로 한다.

제26조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할 경우

40 1 “ ” “ (.)” 4 “ ” “ ”

제40조의2 제1항중 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” 를 “경쟁입찰을

실시하거나 민간전문업체에 분양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40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위탁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

1

가

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의2(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)</p> <p>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<u>공업배치기본계획</u>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의2(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</u> 등-----</p> <p>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의2(산업단지지정의 제한)</p> <p>법 제8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.</p> <p>1. 국가산업단지 :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"라 한다)별로 미분양 비율 5퍼센트 이상</p> <p>2. 일반지방산업단지 : 시·도별로 미분양 비율 10퍼센트 이상</p> <p>3. 도시첨단산업단지 : 시·도별로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10퍼센트 이상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4. <u>농공단지 :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"이라 한다)별로 100만제곱미터 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10퍼센트 이상</u></p> <p>제13조(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)</p> <p>① ~ ⑥ (생략)</p> <p>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<u>15만제곱미터 이상(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)으로 한다.</u>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역 및 입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<u>15만제곱미터 미만(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)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3조(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)</p> 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3만제곱미터이상 (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)으로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6조(비용의 보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~ 8. (생략)</p> <p>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·2.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6조(비용의 보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할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0조의2(장기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가 가</p> <hr/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경쟁입찰</u>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.</p>	<p>제40조의2(장기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hr/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1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4항의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-----경쟁입찰 또는 분양업무의 민간위탁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